

고 시
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-144호

안암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76(2008.08.14.)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성북구고시제 2012-142(2012.09.20.)호로 정비구역변경(경미한변경) 고시되고, 성북구고시 제2016-55호 (2016.05.06.)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지정된 안암동3가 132-17번지 일대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(경미한)변경하고,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20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정비구역지정 변경
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성북구 안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· 감	변 경	
변 경	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성북구 안암동3가 132-17번지 일대	11,196.7	증) 52.0	11,248.7	

※ 변경 사유(법적 근거)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

2. 정비구역지정 변경사항

가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증 감	변 경		
합 계		11,196.7	증) 52.0	11,248.7	100.0	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1,166.0	증) 16.6	1,182.6	10.5	
	도 로	486.8	증) 1.0	487.8	4.3	
	공 원	679.2	증)15.6	694.8	6.2	
택 지	소 계	10,030.7	증) 35.4	10,066.1	89.5	
	택 지	10,030.7	증) 35.4	10,066.1	89.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나. 용도지역 결정(정정) 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비율(%)
	기 정	변 경	변경 후	
합 계	11,196.7	증) 52.0	11,248.7	100.0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11,196.7	증) 52.0	11,248.7	100.0

※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

다.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

1) 도 로 : 변경 없음

결정 구분	규모					기 능	사 용 형태	연 장 (m)	위 치	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 급	류 별	번 호	폭 원 (m)					시 점	종 점			
도시 계획 시설	기정	소로	3	(1)	6~7	국지 도로	일반 도로	320	안암동 3가 132-2	안암동 3가 133-4 8	-	서고 제156호 (91.05.31)	구역내 저촉되는 부분에 한함
	기정	중로	3	(1)	12	국지 도로	일반 도로	90	안암동 3가 132-15	안암동 3가 133-4 3	-	서고 제276호 (08.08.14)	

2) 공원 · 녹지 등

결정 구분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명칭	세분류		기정	증(감)	변경		
도시계획 시설	변경	공원 소공원	안암동3가 132-26일대	679.2	증) 15.6	694.8	서고 제276호 (08.08.14)	

3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: 변경 없음

라. 건축물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

1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 : 변경없음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 고
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기정	안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11,196.7	성북구 안암동3가 132-17번지 일대	92	-	-	-	92	-

2) 건축시설계획 : 변경있음

구분	획지 구분		위 치	주된 용도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m)
	명 칭	면적(㎡)						
기정	택지	10,030.7	안암동3가 133-6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37,000 이하	30% 이하	200 이하	12층이하 (45m이하)
변경	택지	10,066.1	안암동3가 133-6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37,000 이하	30% 이하	200 이하	12층이하 (45m이하)
기정	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• 건설비율(199세대) - 전용면적 85㎡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: - - 전용면적 85㎡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: 100.0% - 임대주택 : 200세대 미만으로 건립하지 않음					
건축선에 관한 계획			• 관계 법령에 의함					

※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

바.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- 변경없음

구 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 고
기 정	관리처분방법에 의함	구역지정고시가 있는날부터 4년 이내	증) 34	

3. 관련서류

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65) 및 안암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사무실(☎927-4333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